
문서번호	: 제 23-80-08 호	2023. 08. 29
수신	: 거래처 제위	
발신	: (주)시피에스티 김보라 차장	
제목	: 공급망 행동 규범	

안녕하세요.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 아래에 공급망 행동 규범을 공유해 드립니다.

제1조 목적

(주)시피에스티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회사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해관계자(이하 "협력사"라 한다)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인권 존중, 안전과 보건, 환경, 기업 윤리,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조 적용 대상

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협력사 책임과 역할

1. 모든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과 사업운영 과정에 있어 이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이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2. 이 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한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 계획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합니다.

제4조 인권존중

1. 협력사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협력사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
3. 협력사의 모든 근로 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강제노동 등에 관하여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조 안전과 보건

1.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협력사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2.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며,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3. 협력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4.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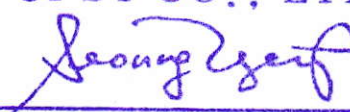
제6조 환경

1.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제반 인허가를 취득, 유지, 관리합니다.
3.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 변경, 원료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4. 협력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노력합니다.

제7조 기업 윤리

1. 협력사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2. 협력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3. 협력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4. 협력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5. 협력사는 자신의 협력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6. 협력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주)시피에스티 대표이사 이 승 업

CPST CO., LTD.

Jeoung Yeup Lee / President